###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- 제 출 일 2019. 10. 24.
- 제 출 자 제 천 시 장

### [제안이유]

- 제천시 농산물 유통의 시장 대응력과 안전한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 역량 강화 필요
- 유통시장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지역농산물 유통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및 제천시 유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「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, 제10조 및「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함.

### [주요내용]

	구	분		내 <del>용</del>
위	탁	현	황	○위 치: 제천시 관내 ○위탁사무: 제천시 농산물의 유통사업 일부 수행
7]	뵨	방	침	<ul><li>○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위탁관리</li><li>○지역농산물 유통활성화를 통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제천시 유통사업을 수탁 적격 법인에 민간위탁 하고자 함</li></ul>

수 탁 자 격	<ul> <li>&gt;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내 농협들이 참여한 법인</li> </ul>
수탁자평가 및 선 정	<ul> <li>○「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7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후 수탁자 선정</li> <li>○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최고득점자 선정</li> <li>▶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</li> <li>○재공고를 통해서도 수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수탁 적격자와 수의계약 체결</li> </ul>
위 탁 기 간	○ 2020. 1. 1. ~ 2022. 12. 31.(3년)
위 탁 경 비	○ 연간 300백만원 : 인건비, 운영비 등
시설이용료	○ 무상 위탁
계약 및 공증	○ 수탁자 선정 후 위·수탁계약 별도 체결, 계약서 공증

#### ○ 민간위탁 추진 일정

- 모습공고	2019. 11.
-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개최	2019. 12.
- 위·수탁 계약 체결 및 공증	2019. 12.
- 위탁개시 및 유영	2020, 01.

### ○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

- 제천시 농산물 유통의 시장 대응력과 안전한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
- 자체운영(직영)시 발생하는 관리인원 인건비 및 시설비 절감 효과

### [참고사항]

{관련근거}

- ○「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」제17조, 제18조
- ○「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, 제10조 {별첨}
-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위·수탁 협약서(안)
-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위탁 계획(안)

### [검토의견]

○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의 시장 대응력을 키우고,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따른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농산물 유통 사업을 역 량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## <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>

-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 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 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  -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  -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  - ③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제천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재계약 또는 재위탁 등 처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.<개정 2015.8.13.>
- **제10조(위탁기간 및 재계약)**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- ② 시장은 사무를 위탁한 기관에 계속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,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  - ③ 시장은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.

#### <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>

제17조(농산물유통사업조직 구성·운영·지원)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생산·가공·유통·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농산물유통사업조직(이하 "유통조직" 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·지원할 수 있다.

- 1.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
- 2. 생산자, 소비자, 가공업, 유통업종사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
- 3.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농산물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
- 4. 온-오프라인 통합마케팅사업
- 5.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, 직거래 지원
- 6.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·홍보·교류협력사업
- 7. 공공(학교)급식사업 등
- 8. 로컬푸드 소비촉진사업
- 9. 영세소농, 귀농인, 고령농 등 소규모 생산농가의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
- 10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유통조직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유통조직 부지 또는 지역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.
- 1. 통합물류시설 : 순회수집・저장・가공・선별・포장・저온물류시스템
- 2. 전처리(前處理)시설 : 1차 농산물의 세척, 박피, 절단 또는 세절하는 등의 단순 가공
- 3. 식품가공시설 : 장류, 김치, 반찬류, 제빵·제과·음료 등의 농식품 가공
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제18조(유통조직 위탁운영) ① 시장은 유통조직 운영을 직영하거나 공공형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, 갱신, 취소에 관한 사항등은 「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- ② 위탁사업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생산 및 유통, 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,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시와 협력하여 로컬푸드업무를 관장한다.
- ③ 위탁사업자는 시장에게 유통조직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,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통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위탁기간 종료후에도 필요한 경우 2년의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# 제천시 <mark>농산물 유통</mark>사업 위·수탁 계약서(안)

2020. 1.

제 천 시

###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위 · 수탁 협약서(안)

제천시	(이하 "위탁기	자"이라 한다	·)와	(0	]하 "수	탁자"이라
한다)은	제천시 농산	물 유통사업의	효율적인	수행을 위	해 각각	위·수탁하기
로 하고	「제천시 사	구의 민간위탁	촉진 및 관	<u></u> 리 조례」	제9조에	따라 다음
과 같이	협약을 체결	한다.				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한 업무를 \_\_\_\_\_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수입금"이라 함은 수탁자에게 지원된 경비 중 인건비, 운영비 등 지출액을 제외한 경비의 잔액을 말한다.
- 2. "수탁자"라 함은 위탁자와 위·수탁계약을 체결한 \_\_\_\_\_를 말한다
- 제3조(위탁사무)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.
  - 1. 생산자, 소비자, 가공업, 유통업종사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사업
  - 2.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농산물 직거래유통 활성화 지원사업
  - 4. 온-오프라인 통합마케팅지원사업
  - 5.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, 직거래 지원사업
  - 6. 지역농산물 이용 캠페인 · 홍보 · 교류협력사업
  - 7. 공공(학교)급식사업 등
  - 8.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사업
  - 9. 공선회 등 농가 조직화사업
  - 10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4조(위탁재산 및 인계인수) 위탁재산은 다음에 표시하는 건물과 장비·물 품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.

#### 【위탁재산의 표시】

- 1. 명 칭:
- 2. 위 치:
- 3. 규 모:
- 4. 장비 및 물품 :
- ① 위탁자는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상기 건물 및 장비·물품 등(이하 "시설물"이라 한다)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수탁자에게 위탁한다. 단, 위탁자가 필요시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설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.
- ② 위탁자는 시설물을 위·수탁 재산 및 장비(물품) 목록대로 인계하며 수탁자는 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시설물의 인수를 완료한 것으 로 본다. 단, 최초 위탁 시 장비 및 물품은 별도 인계·인수한다.
-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위탁관리 재산에 대한 목록 등을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5조(위탁기간 및 협약 등) ① 이 협약에 의하여 수탁자가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위임업무를 관리·운영하는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(3년)까지로 한다.
  - ② 위탁기간 동안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위탁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 있다.
  - ③ 위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수탁자의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전반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며, 재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「제천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  - ④ 협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 협약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.
- **제6조(예산 및 회계)** ① 수탁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-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 회계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관리·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운영계획서 및 예산안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최초위탁 운영 시에는 위탁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관한 운영실 적 및 세입·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④ 수탁자는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한 예산 및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·집행하여야 하며, 반드시 전용통장을 사용하고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를 통해 입·출금 관리해야 한다.(현금 사용 불가)
- ⑤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 결산 후 수입금에 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7조(운영비 등) ① 위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.
  -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제 비용을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, 인건비는 위탁자가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급절차·방법·정산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·「제천시 지방보조금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제천시 재무회계규칙」 등의 규정을 따른다.
  - ④ 위탁자는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운영·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8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관리·운영하여야 하며, 시설물의 개·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.
  - ② 수탁자는 계약체결 즉시 수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과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손실·피해 등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위탁자

를 포함한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.

- ③ 수탁자는 운영기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매년 위탁금 교부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. 단,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금액은 연간 위탁금의 10%이상으로 한다.
- ④ 수탁자는 위탁시설·장비·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, 제3자에게 매매·양도·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, 위탁자의 승인 없이 시설·장비 등을 신설·확장·반입 또는 멸실할 수 없으며, 시설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운영비로 사용했을 경우 준공과 동시에 이를 위탁자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.
-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위탁재산과 위탁기간 중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·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.
-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·자치법규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 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.
- ⑦ 위탁자는 건물 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- 제9조(사무편람)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·처리기간·처리 과정·처리기준·구비서류·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 (별표 1)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  -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③ 제3조의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작성 및 처리한 서류의 소유 권은 위탁자에게 있으며, 이 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  -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개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,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직전년도 서류를 제외한 서류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위탁자에게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위탁자는 모든 서류의 이관을 요구할 수 있다.
  - ⑤ 수탁자가 제3항의 서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멸실·훼손·분실하 거나, 고의로 이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

탁자에게 있다.

- 제10조(재산관리 등) ① 수탁자는 시설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 에 방지하고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  -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(연 2회)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수탁자의 고의 및 과실로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거나, 복구비용에 대하여 시가,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따른 상당액을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.
  -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, 물품 등의 노후로(행정안전부 물품관리지침 상 내구연수경과) 사용불가 또는 폐기 처분 시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하며,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.
  - ⑥ 수탁자는 제5항에 따라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보조금 등의 집행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지도·감독·감사)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·시설 등을 지도·감독·감사할 수 있다.
  - ② 위탁자는 제1항의 지도·감독·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 여야 하며, 수탁자는 위탁자가 정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여야 한다.
- 제12조(민·형사상 책임) ①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관리·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·사고에 대한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.
  - ②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

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③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관리·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(재판상 청구에 한한다)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- 제13조(협약의 해지)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탁자는 손실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.
  - 1. 제8조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- 2. 위탁협약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
  - 3.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4. 위탁기간 만료나 위탁 목적이 소멸하였을 때
  - 5.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탁자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- 6. 그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  - ② 위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등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 - ③ 위탁자와 수탁자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3월전에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준용)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,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「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와 「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및 「제천시 물품관리 조례」의 해당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.
 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.
  - ③ 이 협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- 제15조(협약의 효력)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,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

날까지 효력이 있다. 다만,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·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당해 사건·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.

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 서를 2부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공증을 받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제16조(공증) ① 수탁자는 본 협약서, 위·수탁 재산 및 장비목록(별표 2) 등이 포함된 공증을 받아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.

② 공증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약체결은 무효로 한다.

년 월 일

"위탁자" 제천시(제천시 내토로 295) 제천시장 이 상 천 (인)

"수탁자" ○○○법인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 대표(대표이사, 이사장 등) ○ ○ ○ (인)

#### 〈별표 1〉

# 작성·비치 사무편람 목록 및 서류 보존기간

구 분	내 <del>용</del>	보존기간
조직· 운영관리	<ol> <li>농산물 유통법인 현황</li> <li>농산물 유통법인 조직 및 인력 배치 현황</li> <li>농산물 유통법인 종사자의 업무범위</li> <li>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</li> </ol>	5년간
위탁사무의 처리 및 관리	<ol> <li>농산물 유통법인의 단계별 처리과정 및 처리기준</li> <li>농산물 유통법인의 업무 등 관련 서식</li> <li>농산물 유통법인 관리 및 인건비 급여 기준</li> </ol>	5년간
재무·회계 관리	<ol> <li>위탁재산 관리대장</li> <li>예산서 및 결산서</li> <li>각종 장비 수불대장</li> <li>기타 각 증빙서류</li> </ol>	5년간

#### <별표 2>

# 위 · 수탁 재산 및 장비 목록

【건물목록】

(단위: 원)

위치	구조	규모	충수	준공일	재산가액
		m²			

【차량목록】

(단위: 원)

연번	구입일	차종	모델명	수량	재산가액
1					
2					
3					

【물품목록】

(단위: 원)

연번	구입일	품명	모델명	수량	재산가액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8					



문서번호	年24-32964
등록일자	2019.10.16
결재일자	2019.10.16
공개여부	el

주무관	로컬푸드팀장	유통축산기장	성상	부시장	시장
き処	of hor	5 West	2366	o formy	01 25
협 조	*				

# " 민선7기 농산물 유통 혁신을 위한 =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위탁 계획(안)

#### 《 요약 》

○ 위탁기간: 2020. 1. ~ 2022. 12. 31.(3년)

○ **수탁자격** :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내농협들이 참여한 법인

O 사 업 비 : 연 300백만원 ~

○ **위탁사무** : 제천시 농산물 유통 사업 일부

※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 제18조 위임업무

### 제 천 시 농업기술센터/유통축신과

# = 민선7기 농산물 유통 혁신을 위한 =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위탁 계획(안)

농촌약자와 농민에 실익이 되는 민선7기 농산물 유통혁신 추진에 대한 사업을 농산물 전문 유통법인에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하고자 함.

### I 위 탁 근 거

### 위탁 근거

-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, 제18조
- O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, 제10조

### Ⅱ 위탁개요

- □ 위탁기간 : 2020. 1. ~ 2022. 12. 31.(3년)
- ▲ 수탁자격 :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내 농협들이 참여한 법인
- □ 사 업 비 : 연 300백만원(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증가될 수 있음)
- □ 위탁사무 :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일부
  - 생산자, 소비자, 가공업, 유통업종사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사업
  - O 통합물류 등 농산물 직거래유통 활성화 지원사업
  - O 온-오프라인 통합마케팅 지원사업
  -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, 직거래 지원사업
  - O 지역농산물 이용 캠페인·홍보·교류협력사업
  - O 공공(학교)급식사업 등
  - O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사업

- 공선회 등 농가 조직화 사업
- O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 $\coprod$

## 위탁운영 소요예산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세부항목	소요예산	산출기초
총계		300	
소계	3종	200	
	대표이사(1명)	40	<i>-</i> 대 표 : 40백만원 이내
인건비	경력직(1명)	40	- 경 력 직 : 40백만원 이내
	계약직(4명)	120	- 계 약 직 : 2,500천원×4명×12월 = 120백만원
소계	10종	100	
	제세공과금	3	사업운영기간 및 사업량 대비 임의 증가 산정
	전산비용	20	연 20백만원 기준 산입
	통신운반비	2	사무실 통신 및 연락 비용 임의 산정, 사업량 확대에 따른 연간 2백만 예상
	소모품비	3	사업량 확대에 따른 연간 비용 증대
0.64.01	도서인쇄비	4	분기별 1백만원(신문, 복사지, 공동장표대 등)
운영비	광고홍보비	20	신문광고, 홍보물 등 500천원*4분기
	업무추진비	11	연간 업무추진비 1인 1.8백만원, 인원수 비례 적용
	회의비	5	총회 및 이사회, 실무협의회 및 기타회의비 연 5 백만원 적용
	수선비	3	사무기기 등 수선비 임의 산정
	차량비 및 기타	29	연간 차량 운영비 1대당 14.4백만원(임대 및 운영비용)

#### ※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세부항목별 소요예산은 집행과정에서 조정,변경가능함.

## Ⅳ 위탁 추진 일정

□ 사업계획 수립	2019.	11월
□ 모집공고	2019.	11월
□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개최	2019.	12월
□ 위·수탁 계약 체결, 공증 및 민간위탁 사실 공고	2019.	12월
□ 위탁개시 및 운영	2020.	01월

# V 기대효과

- 제천시 농산물 유통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산물 판매 기반 확충에 기여
- □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로 생산농가에 실질적 소득증대 계기 마련